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078

발의연월일: 2022. 6. 21.

발 의 자:이원택・신정훈・김영호

위성곤 • 유정주 • 최인호

서삼석 • 윤재갑 • 주철현

장경태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지원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농어업 분야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농촌의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42.5%로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도농 가구의 소득격차(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비한 농촌 가구 소득비율) 역시 2020년 기준 62.2%로 조사되면서, 도시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업분야에 대한 조세특례를 계속 유지하여 농어업 가구의 소득을 안정화하고 해당 분야의 경제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

주요내용

- 가. 농업협동조합·농협은행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 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 유통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 (안 제15조제1항).
- 다.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의 적 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					
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					
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					
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50을 <u>2022년 12월 31일</u> 까지 경	<u>2026년 12월 31일</u>				
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					
자금 • 영어자금 • 영림자금(營					
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농수산식	대한 감면) ①
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	
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	
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	
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	
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	
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	
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	
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	
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	
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	
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	
00분의 50을 각각 <u>2022년 12월</u>	<u>2026년 12월</u>
<u>31일</u> 까지 경감한다.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 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세율로 한다.

제	167	조(조현	합받	립인		등	게	대	한	법
	인지	l 방	소	득초	1) :	과	베틀	투례)		
		- <u>20</u> 2	26 ર	1 1	[2월		319	<u>일</u> _			